

제 545 호  
1976.3.2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 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조 례		
제 1023 호	서울특별시 은락시유재산신고 보상금 지급조례	3
◎ 훈 령		
제 440 호	서울특별시 새마을어린이놀이터 관리규정	4
◎ 고 시		
✓ 제 36 호	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 및 일부변경 지적승인	6
제 56 호	서울도시계획시설(하천)결정및 지적승인	7
제 58 호	서울특별시 구청사 위치변경 고시	8
제 59 호	도시계획시설(녹지, 도로)일부변경결정및 지적승인	8

(이면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서울특별시

제 61 호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.....	9
제 62 호 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결정및 지적승인.....	10
제 64 호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결정및 지적승인.....	10
◎ 공 고	
제 66 호 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.....	11
제 67 호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광고.....	11
제 106 호 ( 영등포구광고 ) : 공인신조광고.....	12
제 3 호 ( 은평출장소광고 ) : 농민방위협의회 위원장공인신조광고.....	13
◎ 사 령.....	14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은익시유재산신고 보상금지급조례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 자춘 인

1976년 3월 26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023 호

서울특별시 은익시유재산신고  
보상금지급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57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은익된 시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은익재산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「은익된 시유재산」이라 함은 등기 기타 공부상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시유잡종재산(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여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다만, 서울특별시와 소유권을 다루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

이 계속되어있는 재산은 예외로 한다.

제3조 (신고) 은익된 시유재산을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「시장」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산의 표시
2. 신고자의 주소, 성명
3. 등기부 등본과 토지 또는 가옥 대장등본
4. 도 면
5. 은익된 시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기타 참고사항

제4조 (보상) ①시장이 은익된 시유재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시유재산임이 확정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.

다만, 2할상당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100 만원으로 한다.

②은익된 시유재산이 시장으로부터 대부받은바 있는 연고자가 신고한

재산인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신고자가 선의의 취득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.

③은익된 시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자를 신고자로 본다.

제 5 조 ( 은 익 시 유 재 산 의 처 분 ) 은 익 된 시 유 재 산 은 제 4 조 제 2 항 단 서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대 부 하 는 경 우 이 외 에 는 일 반 경 쟁 입 찰 에 의 하 여 매 각 하 여 야 한 다.

제 6 조 ( 시 행 규 칙 ) 이 조 제 시 행 에 필 요 한 사 항 은 규 칙 으 로 정 한 다.

부 칙

이 조 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서울특별시 새마을어린이놀이터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76년 3월 26일

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

◎ 서울특별시훈령제 440 호

서울특별시새마을어린이놀이터관리규정  
서울특별시 새마을 어린이놀이터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 ( 목적 ) 이 규정은 서울특별 시내 어린이놀이터 (이하 놀이터라 한다)에서 보다 많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명랑하게 시설물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건전한 체위향상과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 정의 )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놀이터라 함은 서울특별시가 시설한 놀이터 또는 사인이 시선하여 시에 기부 채납된 놀이터로서 만 13세이하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를 말한다.

② 관리책임자라 함은 놀이터를 관리하는 새마을관리추진위원장을 말한다

제3조 ( 관리대상 ) 놀이터 관리대상은 이미 시설된 128개의 놀이터와 앞으로 신설되는 놀이터로 한다.

<p>제 4 조 ( 관리추진위원회 구성 ) ① 놀이터관리를 위하여 『새마을 어린이 놀이터관리추진위원회』 (이하 위원회라 한다) 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관할 동에서 농민의 신망이 두텁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,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.</p> <p>제 5 조 ( 위원회 직무 )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리인의 배치와 순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시설물 ( 유희기구, 펜스, 관리사무원 등 ) 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</li> </ol>	<p>복구대책에 관한 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놀이터 시설물의 예호를 위한 계몽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제 6 조 ( 금지행위 ) 놀이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들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체의 행위</li> <li>2. 놀이터에 개, 닭 등의 방사 행위</li> <li>3. 놀이터에서 자전거 주행 행위</li> <li>4. 담장 및 펜스 주변에 쓰레기 적치 행위</li> <li>5. 성인출입 및 시설물 이용행위</li> <li>6. 수목 훼손 및 굴취행위</li> <li>7. 장상인 구두닦이 등 행위</li> <li>8. 기타 어린이놀이터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</li> </ol> <p>제 7 조 ( 관리보고 ) 시설물의 이적이 나 보수할 때에는 위원장이 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.</p> <p>제 8 조 ( 지도감독 )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지도 감독하고 관리상태를</p>
---	--

순위별로 작성 시장에게 월별로 보고한다.

②시장은 년1회 이상 놀이터 관리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놀이터에 대하여는 시상한다.

제9조(정기회의) 시장은 각 놀이터위원회 위원장회의를 년1회이상 개최하고 관리 개선에 노력한다.

제10조(기타) ①제8조에 의한 종합점검 결과 상태가 불량한 놀이터에 대하여는 동장을 문책하고 위원회를 개선토록 한다.

②제6조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을 경고하고 동장을 문책하며 관리인을 교체케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36 호

도시계획시설(유수지) 결정 및 일부변경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대통령령 제7753호(75.8.22)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3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 및 지적승인조서				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신정유수지	영등포구목동 164-174 일대	82,000	
"	안천유수지	강남구가락동 507-509 일대	100,700	
"	시흥유수지	영등포구시흥동 557-561 일대	6,770	
"	도림제1유수지	영등포구신도림동 612-647 일대	29,800	
"	휘경유수지	동대문구휘경동 7, 면목동 1049	26,000	
"	천산유수지	영등포구구로동 689 일대	62,300	
"	신길유수지	영등포구신길동 43-59 일대	8,560	
기정	도림제2유수지	영등포구신도림동 276-324 일대	47,413	
변경	도림제2유수지	영등포구신도림동 276-324 일대	24,700	

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생략)	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56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(하천) 결정 및 지적승인  1. 당시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다 음과 같이 시설결정하고,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	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.  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.  1976. 3. .  서울특별시장

가. 하천시설결정조서				
구분	시설명	연장	기 점	종 점
신 설	불광천	8,790 m	불광동 424	한강 합류점
신 설	봉원천	1,250	당인리 철교교량	"
신 설	대방천	7,400	상도동 34	신길동 도림천합류지점

나. 하천지적승인조서					
구분	시설명	연장	기점	종점	비고
신설	불광천	1,466 m	중동 86-5	성산동 341-5	
신설	봉원천	308	서강교	봉원교 강변도로 교량	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					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8 호</p> <p>서울특별시 구청사 위치 변경고시</p> <p>서울특별시 관할구청중 다음과 같이 청사의 위치가 변경 되었기 고시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3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다 음</p>					
구 명	위		치		이 전 일 자
	변 경 전		변 경 후		
성 동 구	중구 신당동 245-1		성동구 자양동 220-147		76.3.25.
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녹지, 도로 )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</p> <p>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( 녹지, 도로 ) 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일부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하였기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 73. 4.4 ) 의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3. 24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</p>					



가. 시설 ( 녹지 ) 조서							
구 분	시설명	위 치		면 적	비 고		
신 설	녹 지	마포구 성산동 산 53-1외 97필지		362,980㎡			
나. 시설 ( 도로 ) 변경조서							
구 분	등급	류 별	폭 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폐지	소 로	2	8 m	160 m	성산동 514-5	성산동 511-14	
·	·	2	8	370	성산동 515-17	성산동 산 53-6	
·	·	2	8	150	성산동 511-22	성산동 521	
·	·	2	8	55	성산동 523	성산동 520-2	
·	·	3	6	185	성산동 산 58	성산동 511-16	
·	·	3	6	440	성산동 515-6	성산동 511-22	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			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1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지적승인</p> <p>1. 건설부고시 제 201호 ( 75.12.17 ) 로 결정된 당시 도시계획시설 ( 도로 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</p>				<p>( 73.4.4 )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면은 서울시장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3. 25. 서울특별시장</p>			
가. 지적승인조서							
등급	류 별	번호	폭 원	연 장	기 점	중 점	비 고
광 로	34	34	40	2,605	송파동 광-25	풍납동 광-5	미확정구간고시
대 로	3	110	25	3,000	풍납동 광5	암사동 강변	·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							
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결정 및 지적 승인</p> <p>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( 시장 )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( 73.4.4 ) 의</p>		<p>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3. 25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
<p>가. 결정 조 서</p>				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신 설	난곡시 장	신림동 637-1	2,461.8	난곡마을금고
신 설	동양시 장	고척동 57-7	1,006.5	산업인아파트단지
신 설	동부종합시장	천호동 425-1 425-63	8,451.3	동부산업 ( 주 )
<p>*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 도면생략 )</p>				
<p>◎서울특별시고시제 64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결정 및 지적 승인</p> <p>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( 주차장 )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</p>		<p>123 호 ( 73.4.4 )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76. 3. 26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서울특별시장</p>		

가. 주차장 결정조서

위	치	면	적	비	고
영등포구	양평동 1가	216	2,186 (662명)	현	성 운 수

※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.

**공 고**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66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 
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의 규

정에, 외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 
취소하고, 동법제 26 조의 규정에  
의하여 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 
공고한다.

1976. 3. 24

서울특별시

업	제	명	대표자	허가번호	소	제	지	취	소	사	유	
신진	전기	공업	사	오윤영	1-1-20	성동구	성수동 2가	277-26	법정	기간	내에	형식
									승인	미취득		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67 호

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역촌, 시공, 신림주  
가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 
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을 다음과  
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

업법제 47 조, 제 55 조, 제 33 조 및  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 
규칙제 25 조제 11 항제 3 호의 규정에  
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  
공고한다.

2. 환지계획 변경관계도서는 서울  
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

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3. 서류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 한다.

1976. 3. .

서울특별시장

1) 사업명 : 역촌, 시공, 신림추가  
토지구획 정리사업

2) 변경지역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
중산동 일부토지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 
일부 토지  
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
일부 토지

3) 필지수 : 8 필

4) 변경조서및도면 : 생략 (서울특별시  
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관  
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)

◎영등포구공고제 106 호

공 인 신 조 공 고

영등포구청장 처인 및 재인을  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  
에 의거 개작하고 제9조 및 제  
1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.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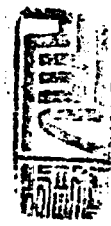
신조공인사용일 :

1976.4.1 00:00

1976. 3.20

영등포구청장 김택수

공 인 신 조 인 영

신		구	
구청장 처인			영등포구 재인
			

◎은평출장소공고제 3 호

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신조공고

민방위기본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민방위 협의회 위원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1976. 3. 9.

서울특별시 은평출장소장 연 기 호

- 다 음 -

1. 공인의명칭 (민방위협의회 위원장

의 인 (지인) )

북현동, 불광제 1 동, 불광 2 동, 갈현동, 구산동, 대조동, 용암제 1 동, 용암제 2 동, 용암제 3 동, 대동, 신사동, 진관내동, 진관외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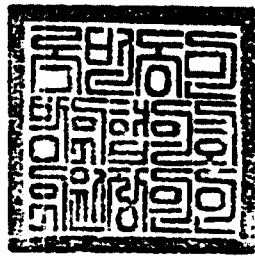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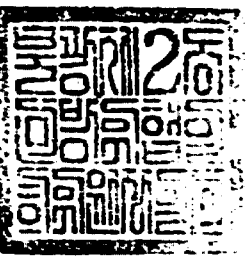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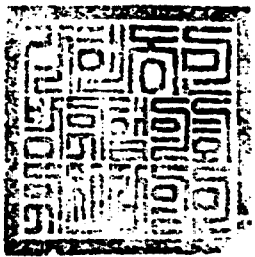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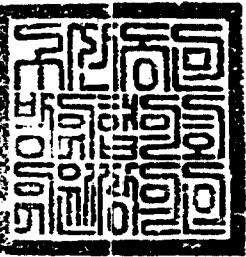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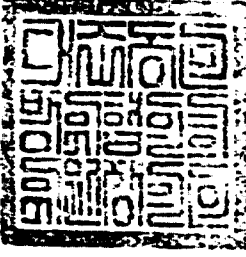
2. 공인의 인명 (별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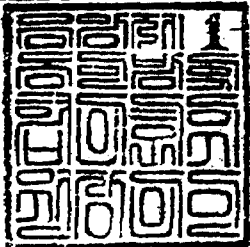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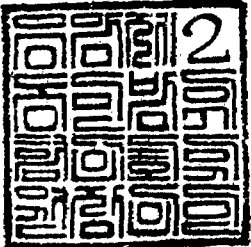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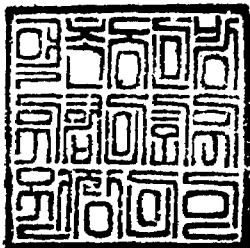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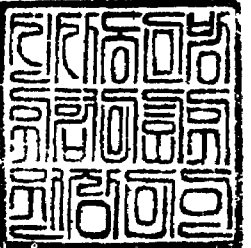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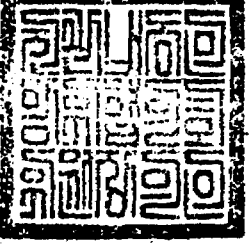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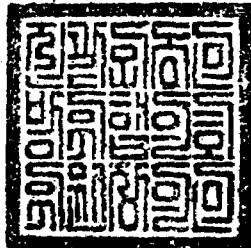
3. 사용계시 년월일

76. 3. 20 09:30

공 인 의 인 명

(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의 인)

북 현 동		불 광 제 1 동		불 광 제 2 동	
갈 현 동		구 산 동		대 조 동	

<p>용암계 1 동</p> 	<p>용암계 2 동</p> 	<p>용암계 3 동</p> 
<p>역촌동</p> 	<p>신사동</p> 	<p>진관내동</p> 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형</p> <p>© 1976. 3. 19</p> <p>행정조정실 부이사관 김 영 만 건설행정담당관에 포함.</p> <p>경부 보전장 서기관 이 영 화 수도국 수도행정담당관 직무 대리를 명함.</p> <p>대통령비서실 서기관 강 덕 기 내무국 시민과장에 포함.</p> <p>대통령비서실 처기관 최 영 진 관광운수국 운수 3과장에 포함.</p>		<p>진관외동</p>  <p>도봉구시민 생활국장 서기관 이 문 최 지방서기관에 임함.</p> <p>관악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.</p> <p>영등포구 계가관 오기철 지방서기관에 임함.</p> <p>영등포구 건설관리국장에 포함.</p>

<p>도 북 구 서 기관 김용주 민방위국장 지방서기관에 임함. 용산구 건설관리국장에 보함.</p>	<p>○ 1976.3.20 지하철본부 지방건축과 박경원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
<p>성 북 구 서 기관 이경만 민방위국장 지방서기관에 임함. 마포구 건설관리국장에 보함.</p>	<p>○ 1976.3.22 서대문구 지방행정과 임관비 마포구 지방행정과 김도이</p>
<p>성 동 구 서 기관 엄주창 민방위국장 지방서기관에 임함. 성동구 건설관리국장에 보함.</p>	<p>용산구 지방행정과 두병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.</p>
<p>마 포 구 서 기관 이규현 민방위국장 지방서기관에 임함. 서대문구 건설관리국장에 보함.</p>	<p>총무과 지방행정사 신상순 운수3과 지방행정사 유학준</p>
<p>수도국수원과장 토목기정 박원선 지방토목 기정에 임함. 노량진수원지 사무소장에 보함.</p>	<p>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사 이운기</p>
<p>성동구토목과장 토목기과 황부성 지방토목 기과에 임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문화공보실 문화계장직무대리를 명함. 관제과 산처문계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
<p>1976년 3월 19일 대 통 령</p>	<p>은평출장소 지방행정사 윤사현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.</p>

<p>감사담당관 지부행정사 김진국</p> <p>통제담당관 통제조사계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 <p>감사담당관 지부행정사 심재천</p> <p>성북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세정과 지부행정사 김종경</p> <p>성북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주택건설사업소 지부행정사 강영우</p> <p>운영과 편성계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 <p>성북구 지부행정사 안현용</p> <p>도봉구 근무를 명함.</p> <p>관악구 지부행정사 이경서</p> <p>도봉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성동구 지부행정사 김진식</p> <p>성동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 <p>상정과 지부행정사 이서용</p> <p>마포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용산구 지부행정사 김영선</p> <p>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중구보건소 지부행정사 이근상</p> <p>도봉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성동구 지부행정사 조경호</p> <p>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시정개발담당관 지부행정사 손홍구</p> <p>중부병원 근무를 명함.</p> <p>통제담당관 지부행정사 정재택</p> <p>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.</p> <p>행정과 지부행정관 윤순화</p> <p>용산구 근무를 명함.</p> <p>경리과 지부행정관 유래봉</p> <p>성동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주택관리과 지부행정관 유지철</p> <p>경리과 조달계장에 보함.</p> <p>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김창신</p> <p>행정과 행정관리계장에 보함.</p> <p>중부병원 지부행정사 홍연표</p> <p>도봉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함.</p> <p>성북구 지부행정사 이철우</p> <p>상정과 소비자보호계장에 보함.</p>
---	--



<p>연 로 과 지방행정 사무관 정호진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	<p>15호봉을 급함. 영선과 과장에 보함.</p>
<p>마 포 구 지방행정 사무관 신정우 주택관리과 주택관리제장에 보함.</p>	<p>주택건설과 장 안중희 공사 2 과 직무대리 지방건축 기정에 임함.</p>
<p>도 봉 구 지방행정 사무관 유병돈 도시행정과 정리 1 계장에 보함.</p>	<p>22호봉을 급함. 주택건설공사 2 과 과장에 보함.</p>
<p>영 등 포 구 지방행정 사무관 손장호 마포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영 선 과 지방기 계원 김광모 복직을 명함. 6호봉을 급함.</p>
<p>○ 1976.3.26</p>	<p>영선과 근무를 명함.</p>
<p>영 선 과 과 장 김춘식 직무대리 지방건축 기정에 임함.</p>	<p>○ 1976.3.27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박득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

서 울 특 별 시 장